
환경 모범기준(안)

2021.03.



목 차

I. 리더십과 거버넌스	2
II. 위험 관리	7
III. 운영 및 성과	13
IV. 이해관계자 소통.....	25
V. 부록	29

한국기업지배구조원

I. 리더십과 거버넌스

1. 환경경영 리더십

1.1 최고경영진은 환경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환경경영의 의의) 환경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의미한다.

(최고경영진의 환경경영 의지 표명) 최고경영진은 환경경영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실천의지 및 지원활동을 경영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진은 환경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투자계획을 대내외적으로 '환경방침'을 통하여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고경영진의 환경경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 의지에 대한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최고경영진의 리더십) 최고경영진은 환경경영 활동을 추가적인 비용문제로 인식하거나 규범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환경경영은 기업경영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뿐 아니라 기업 이익을 창출하는 경영활동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기업은 책임 있는 환경경영을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이때, 최고경영진에 의한 환경경영 리더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2 기업은 최고경영자의 환경경영 실천의지를 표명한 환경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환경방침 수립의 의의) 기업은 효율적인 환경경영을 실행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요구되는 환경책임 및 성과의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방침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방침의 문서화) 기업은 환경경영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 및 환경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환경경영 실천의지를 담은 환경방침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방침은 최고경영진이 승인한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되어야 하고,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환경방침의 내용 및 요건) 환경방침은 최고경영자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제시된 환경성과와 관련된 조직의 환경경영 이념 및 방향을 의미한다. 환경방침은 환경목표를 설정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직의 환경경영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의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

- 조직의 환경경영 이념 및 활동 방향을 제시할 것
-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의 성격, 규모 및 환경영향을 포함한, 조직의 목적과 상황에 적절할 것.
- 환경목표를 설정하는 틀을 제공할 것
- 조직의 상황에 관련이 있는 환경오염 예방과 그 밖의 구체적인 영역(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생물다양성 존중, 생태계 보전 등)에 대한 환경경영 의지를 포함할 것.
- 조직의 준수 의무사항을 충족한다는 의지를 포함할 것.
- 환경성과의 향상을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의지를 포함할 것.

(환경방침의 이행) 최고경영진은 환경경영 방침의 수립과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므로, 환경경영 방침이 기업문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며,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환경경영 전략 및 목표

2.1 기업은 환경경영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경영 전략은 기업의 경영 전략 및 방침과 통합하여야 한다.

(환경경영 전략 수립) 환경경영 전략이란 기업이 책임있는 환경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 설정 및 효율적 자원배분 관리 방법을 의미한다. 환경경영 전략은 전 가치사슬을 고려한 관점에서 기업이 외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기업 내부의 환경 성과를 높이며, 나아가 경영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환경경영 전략은 기업의 모든 환경경영 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업은 환경전략 수립 시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하며,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시각에서 환경경영을 추진하여야 한다.

(환경경영과 경영전략과의 일관성) 환경경영 전략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영전략임을 인식하고 기업의 장기적 경영전략 및 목표와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환경경영 전략 수립 시 산업적 특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

2.2 기업은 환경경영을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환경경영 목표 수립) 기업의 효과적인 환경경영 활동을 위해서 환경법규 준수를 위한 의 무사항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위험과 기회요인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계층에서 환경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기업의 환경경영 방침 및 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업의 산업적 특성, 시장환경 변화,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하고 반영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목표 관리체계) 기업은 전사적 차원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의 영역에 따른 환경영향과 시간 주기를 고려하여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기업은 전사적 환경목 표와 함께 측정가능한 세부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구체적인 시간 계획이 포함된 단기 및 중·장기 환경목표를 수립하여 연도별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행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 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세부 추진 계획 수립) 기업의 환경목표와 연계하여 시간적 주기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세부 추진 계획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영활동, 제 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환경법규, 요구사항의 개정 동향 및 변동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환경목표 및 계획의 공유) 기업은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계획을 이행하는 데 있어 모든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의 업무와 활동을 파악하고 각 구성원이 책임을 인지할 수 있 도록 기업의 환경목표 및 계획을 모든 구성원 및 협력사 임직원과 공유하여야 한다.

3. 환경경영 거버넌스

3.1 기업은 전사적 환경경영체계를 수립하고 주요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의사 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전사적 환경경영체계 구축) 기업은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환경경영을 수립 하기 위하여 주요 환경이슈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환경경영 활동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사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경영 수행을 위한 적절한 조직체 계가 구성되고 인적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며 환경경영 및 성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 여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환경적 위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 효율성 제고) 기업은 환경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은 환경경영 활동과 성과를 PDCA(Plan-Do-Check-Act, 계획-실행-점검-조치)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나아가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중·장기적 환경목표 및 조직 내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최고경영진의 중대성 이슈와 연관시켜 관리하고, 보상체계를 연동하여 성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기업은 환경경영의 목표, 활동 및 성과 등 주요 이슈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환경경영 활동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는 기업의 환경경영 이슈 및 주요 결정사항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환경경영의 중요성과 책임을 인식하고 환경경영의 실행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단기적 환경성과 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 환경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경영활동의 위험과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영활동에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과 경과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은 물론, 사업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이사회 내에 환경이슈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이사회에 환경경영 실행 및 감독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3.3 기업은 환경경영체계를 실행 및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하며, 환경경영을 전담하는 실무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환경경영 추진조직 구축) 환경경영체계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환경영향을 파악하는 환경경영 전담 실무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환경경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은 전담 실무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환경경영 활동과 관련된 명확한 역할, 책임,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담 실무조직의 책임자는 각 부문별 조직의 상호 간 의견조정 및 의사소통 뿐 아니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고경영진에 환경경영 활동에 대한 보고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전담 실무조직의 구성원들은 환경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기업은 임직원의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환경 관련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임직원의 환경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경영 기업문화 조성의 필요성) 기업의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이 환경에 관한 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상황을 이해하고 환경경영의 의미와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환경경영 교육) 기업은 주요한 환경 정보 및 환경경영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환경교육 실시 여부, 교육 일시, 교육명 등 환경교육 실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환경교육의 내용은 법령이나 기술 동향에 맞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며, 교육 대상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경영 목표 및 계획 공유) 기업은 환경경영 목표 및 계획을 달성하는 데 있어 모든 임직원들이 다른 구성원의 업무와 활동을 파악하고 각자의 책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환경방침 및 전략과 더불어 환경목표와 계획을 모든 임직원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임직원 참여 유도) 기업은 환경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은 조직의 환경방침과 목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임직원들이 준수하고 그들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환경경영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은 환경경영과 관련된 사내 아이디어 또는 관심사항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보유하거나, 임직원 주도의 친환경 프로젝트 혹은 캠페인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하향식(top-down) 뿐만 아니라 상향식(bottom-up) 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Ⅱ. 위험 관리

1. 환경 위험과 기회의 식별, 평가 및 관리

1.1 기업은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환경 위험 및 기회를 파악하여야 한다.

(위험과 기회 식별의 필요성) 기업은 경영활동과 관련된 환경 위험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경영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생태계로부터 자연자원을 이용함에 따른 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형성 및 경쟁우위 확보 등의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프로세스 구축) 기업은 전사적 위험 관리 체계에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경영과 관련된 주요한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환경영향 규명) 기업은 환경 위험 및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서 산업적 특성 및 시장 변화를 고려할 뿐 아니라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잠재적 환경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위해 주요 환경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함으로써 환경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위험과 기회 우선순위 도출) 환경경영 관련 주요 이슈는 기업의 산업적 특성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환경경영과 관련된 주요한 위험 및 기회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때, 기업에 중대한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경영 위험의 영향과 노출 수준 등을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3 주요한 환경 위험 및 기회는 환경경영 방침 또는 전략 수립 시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전략과 통합하여 주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위험 및 기회 관리체계) 기업은 환경경영 위험 및 기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경영 운영 단계에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환경경영 담당자에게 환경경영 위험 관리, 성과 및 기회 요인 발굴에 대한 감독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친환경 자금 조달) 기업은 환경경영 활동을 이행하거나 친환경 사업 전략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자금 조달의 방편으로 녹색채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색채권은 발행 자금이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기업은 내부적으로 추진하던 친환경 활동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 평가, 공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2.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2.1 기업은 사업 전략과 재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식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여야 하며, 글로벌 시장과 연계된 새로운 규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규제와 물리적 요소의 변화는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신재생 에너지 도입,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에 기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a. 위험 요인

위험 유형	위험 요인	주요 내용
물리적 위험 (Physical risks)	단기(Acute)	허리케인, 태풍, 홍수 등과 같은 단기적 기후현상의 빈도 및 강도 증가로 인한 위험
	장기(Chronic)	장기적 기후패턴변화(예: 평균기온의 지속적 상승)로 인한 해수면 상승 또는 이상고온현상 지속 등으로 인한 위험
전환 위험 (Transition risks)	법규(Legal)	모든 유형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송 기후변화 관련 규제 및 정책
	시장(Market)	특정 원자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의 변화
	평판(Reputation)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기업의 기여 또는 저항에 대한 소비자 또는 사회의 인식 변화와 연결되는 모든 위험
	기술(Technology)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경제시스템을 촉진하는 기술의 개발 및 혁신과 관련한 모든 위험

b. 기회 요인

기회 요인	주요 내용
자원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성 높은 운송수단의 이용 - 효율성 높은 제품 및 물류 시스템의 이용 - 재활용/재이용 - 효율성 높은 건물의 이용 - 물 사용량 및 소비량 저감 - 기타
에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에너지 이용 -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 활용 - 신기술 이용 - 탄소시장 참여 - 분산전원 이용 - 기타
제품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확대 -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상품 개발 - R&D 및 혁신을 통한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 사업군의 다변화 - 소비자 선호도 변화 - 기타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성 증가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 - 공공섹터의 인센티브 활용 - 녹색채권 및 인프라의 인수, 자금조달 - 기후리스크를 고려한 금융상품 개발 - 기타
회복탄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참여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수단 도입 - 대체자원의 확보 및 다변화 - 회복탄력성을 고려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도입 -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 장기적 재무/금융 부문의 투자 강화 - 기타

2.2 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및 기회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위험요인 분석) 기업 경영활동 시, 환경, 사회 등 비재무적 위험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공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업은 단기, 중기 및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에 미칠 전략적·재무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좌초자산 등의 위험 고려) 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의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혹은 철회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는 기업에게 평판위험을 넘어 경제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적인 좌초자산(stranded asset)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또한 해당 위험에 노출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하거나, 자산의 저탄소 포트폴리오 전환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금융 개발 및 활용을 확대하는 등 기후변화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기업은 미래의 투자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친환경 사업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분석 활용 및 적용) 나아가, 기업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 영향과 위험 수준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미래예측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시나리오 분석을 적용할 때는 전사적 수준 뿐 아니라 시장 수준, 기업의 전략, 자본 배분, 비용 및 수익에 미치는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관리)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제조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직·간접적인 환경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기후변화 및 환경 위험을 신용위험의 하나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환경 관련 이슈들을 단기적인 수익성과 연계시키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도 비재무적 위험 관리측면에서 기업의 중대한 환경 위험 및 기회 요인을 도출하여 환경성과를 관리하도록 한다.

특히, 금융기관은 내적 위험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기업, 석탄화력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 등 위험이 큰 투자 및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나 고효율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은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및 운영위험과 같은 금융권의 전형적인 위험과 기회 요인을 환경 및 기후변화와 연관시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외적 위험 관리 차원으로는 여신 및 금융 중개 활동에 있어 고객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기후변화 및 환경 위험의 범위와 영향을 고려하고 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위험관리체계

3.1 기업은 규명한 환경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사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기업의 경영활동,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

성이 있는 환경적 측면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위험 예방 전략 수립 및 추진) 기업은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위험, 화학물질 관련 규제 위험, 기후변화 위험 등의 환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온실가스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경영활동 뿐 아니라 공급망의 환경책임을 고려하여 가치사슬 전반에서 사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 여부를 평가하여 개선 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 위험 대응) 기업이 환경법규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환경규제 및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오염배상책임,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조업정지 등 여러가지 직·간접적 제재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 및 미래의 책임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경영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법규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 개정 동향 및 변동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업은 환경 관련 규제로 인한 위험 뿐 아니라 그 밖의 환경 위험(환경사고 등에 따른 기업 이미지 하락, 투자자의 투자 회피,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원·부자재, 용수 및 에너지 절감, 청정생산기술 도입 확대에 따른 시장경쟁력 강화, 시장 내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매출 및 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 더불어 경영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사고, 분쟁, 민원의 발생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전예방적 차원의 환경 위험 관리 활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 개선, 자본비용 감소를 유도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3.2 기업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비상사태 및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단계별 대응 절차 수립) 기업은 경영활동 시, 부정적 환경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사태 및 사고 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사전예방, 조기감지, 확산방지, 조기복구 등에 이르는 각 단계별 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유형별·단계별 시나리오 수립) 기업은 비상사태를 파악하고, 유형별·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정기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더불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예방 및 점검 활동 기준을 수시로 검토하여 조치 내역을 문서화 하고 내부 구성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3 기업은 환경법규 위반 및 환경사고 발생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후 조치 즉각 이행) 기업은 경영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법규 위반 및 환경오염 행위에 의해 발생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법규 위반 및 환경사고에 대한 사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내 시설로 인한 제3자의 환경오염피해(점진적, 급진적)에 대하여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이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고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거대 피해에 대한 배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운영 및 성과

1. (설계)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1.1 기업은 자사의 제품(서비스 혹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설계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전략을 설계, 수립하는 단계에서 글로벌 혹은 지역사회의 환경이슈를 고려함으로써 기업의 환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친환경 설계의 의의) '친환경 설계(eco-design)'란 제품(서비스)을 기획, 개발 설계하는 단계에서 제품(서비스) 전 과정(life cycle)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 저감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전 과정' 단계에는 원료물질의 채취, 설계, 생산, 운송/배송, 사용, 사용 후 처리 및 최종 폐기가 포함된다.

(친환경 설계를 통한 순환경제 구현) 기업은 친환경 설계 활동을 통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기업은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ing) 또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이 가능하도록 제품 전 과정 관점에서의 자원순환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분리 배출이 용이하도록 제품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폐기 처분하는 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제품 내 재생원료 함량을 확대하는 등 기업은 순환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사업 전략을 구상하고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생산에서 소비, 폐기로 이어지던 일방적인 자원의 흐름을 최종처리 이전에 순환형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글로벌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 대비 회수율이 낮으며 소각하거나 부적정 처리 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다량 배출된다. 따라서 기업은 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계 단계에서 전자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2 기업은 친환경 설계를 통해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정의) '친환경 제품'은 제품의 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며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친환경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과정에 걸쳐 환경 부하를 줄이도록 체계화된 것을 의미한다. 생산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인 기업은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인증 활용)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환경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은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를 비롯한 국내외 친환경 인

증을 획득하여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은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친환경 경영에 대한 기업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2. (조달/구매/유통) 친환경 공급망

2.1 기업은 공급사슬(supply chain)의 환경성과 향상과 제품(서비스) 책임주의 구현을 위하여 녹색구매, 협력업체 지원 및 관리 등을 통한 친환경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친환경 공급망 관리의 의의) '공급망 관리'란 원자재 및 부품의 조달부터 생산, 판매, 물류 등을 거쳐 고객에게 도달하기까지 전 과정의 가치사슬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친환경 공급망 관리'란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부터 사용, 처리,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기업은 제품 제조사 및 공급 협력업체의 환경 위험에 대한 사전적 예방 뿐 아니라 친환경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하여, 전 과정 가치사슬 단계에서 환경관리 정책과 목표 및 환경정보를 고려한 친환경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기업은 친환경 제품의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구매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녹색구매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녹색구매의 의의) '녹색구매'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활동으로 친환경 원·부자재 및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뿐 아니라 용역(서비스) 및 공사 계약을 통해 제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녹색구매는 시장 내 친환경 제품 수요를 촉진함으로써 친환경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친환경 제품(서비스) 사용단계에서의 환경영향 저감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녹색구매 지침) 기업은 녹색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자체적인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녹색구매 지침에는 녹색구매에 대한 기준, 범위, 책임과 권한, 절차 등이 포함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기업은 '산업계 녹색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사의 녹색구매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은 녹색구매 이행 실적을 파악 및 공개하여 친환경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기업은 녹색매장, 친환경소비 캠페인 등을 통해 녹색구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제품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친환경 소비 문화 기반 조성) 기업은 녹색매장 지정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친환경 제품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 및 접근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장재를 없애거나 최소화한 매장, 비포장 소분판매 등 친환경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친환경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新경제체제와의 연계) 뿐만 아니라 기업은 친환경 제품의 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구독서비스와 같은 新경제체제와 연계하여 친환경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기업은 자사의 환경성과 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환경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의 환경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협력업체의 환경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상생경영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협력업체 환경경영의 필요성) 협력업체의 환경문제가 기업의 최종 제품 및 서비스에 반영되므로 기업의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공급사슬 전체의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고 환경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협력사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기업은 정성·정량적인 자체기준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거나 제3자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성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는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이행능력을 점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은 협력업체의 환경성과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협력업체에게 장기공급권, 계약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평가 절차 및 결과를 협력업체와 공유함으로써 환경성과 개선에 대한 동기부여 및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상생경영: 협력사 지원) 기업은 협력업체의 환경경영 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사의 환경경영체제 구축 및 실행에 관한 교육, 친환경 생산 및 물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환경경영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환경정보 제공, 녹색구매 관련 공지 및 교육,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 공유, 친환경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상생경영: 협력사 유해화학물질 정보 관리 지원) 기업은 협력업체가 사용 중인 취급제한 유해물질 등의 환경정보 관리를 지원하고, 해당 유해물질 사용금지 혹은 대체재 사용을 유도하거나 유해물질 함량 저감을 추진하는 등 위험 예방 차원에서 협력업체의 유해화학물질정보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3. (생산) 친환경 사업장

3.1 기업은 자사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 생산 활동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 및 실행하는 친환경 사업장을 구현하여야 한다.

(친환경 생산의 필요성) 지속가능성의 환경적 측면은 기업이 생물과 비생물을 포함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기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 하면서 최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 요구된다. 기업은 미래에 이용가능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부자재, 수자원, 에너지 등 생산·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자원을 절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원사용의 효율을 도모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친환경 생산의 방법 및 효과) 기업은 생산·제조공정에 투입된 자원과 배출되는 물질의 양을 파악하고,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대안의 실행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친환경 생산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친환경 사업장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은 생산공정의 작업조건과 관리방법 개선, 친환경 신규 설비 도입,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기존의 공정설비 교체 등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다.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자원 절감 및 환경 관련 비용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익을 기업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3.2 기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사용량 저감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사용 활동을 전개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온실가스의 정의)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물질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명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6가지를 일컫는다.

(온실가스 배출 구분) 온실가스 배출의 구분은 배출원에 따라 Scope1(직접 온실가스 배출), Scope2(간접 온실가스 배출), Scope3(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보일러, 운송수단 등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1)과,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없으나 기업이 전기, 스팀, 열 등을 구입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2)이 있다. 그리고 Scope1과 Scope2 이외의 배출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Scope3(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로 구분한다.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기업은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을 확인하고 배출책임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주요 온실가스(Scope1, Scope2)에 대한 배출량을 측정, 기록, 보

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온실가스를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제3자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 이용 및 관리) 기업은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감할 뿐 아니라 에너지 이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및 화석에너지 절감 활동을 개발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은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고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존 설비의 에너지 효율 향상, 고효율 설비 도입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기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발자국을 줄이기 위하여 화석연료 에너지원(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대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등)의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우선시함으로써, 전 세계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RE100 선언을 통해 저탄소 신시장을 확대하며 선제적 리더십을 제공하고 있는 바, 글로벌 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국내 기업에게도 신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기업은 원·부자재, 용수 사용량을 줄이고 자원순환형 사업장을 구축하여 자연자원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원·부자재 및 용수 사용 절감) 생태계로부터 얻어지는 원자재, 수자원과 같은 자연자원은 종류와 양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부자재, 용수 등의 자원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은 생산활동으로 인한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기업은 완제품의 자원사용량을 고려하고, 사용하는 자재를 재생가능한 원료, 불순물이 적은 원료 등의 친환경 물질로 대체하거나, 절수기 설치와 같이 자원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신규 설비 혹은 청정생산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자원순환형(Closed-loop System) 사업장 구축의 필요성) 생산과정에서 원자재, 수자원 등의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는 자원 이용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에서 폐기로 이어지던 일방적인 자원 흐름을 최종처리 이전에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자원순환형 사업장을 구축함으로써 자원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원·부자재 및 용수 재활용 설비 도입) 원·부자재 등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은 재활용(recycling), 재사용(reusing) 및 자원재생(reclaiming)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경제성과 환경성이 확보되는 경우 기업은 폐기물 재활용 설비 등을 사업

장에 도입하여야 한다.

한편, 용수 재사용률은 이용하는 수자원에 대한 효율성의 척도로서 용수 재사용량이 증가하면 용수의 취수량과 폐수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고 제반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경제성과 환경성이 확보되는 경우, 중수도 설비, 빗물 재이용 설비 등의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4 기업은 생산활동의 부산물로 인한 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으므로, 경영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오염원, 배출원 등을 확인하고, 생산·제조공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발생 및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물질의 관리) 기업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법규에서 명시하는 여러 환경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배출에서 최종처리 전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다양한 개선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나아가 자체 내부 관리기준 수립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이 대기, 수질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기업은 사업활동에 따른 폐기물 및 폐수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및 폐수 적법 처리) 기업은 자원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 및 폐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기 이전에 가능한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폐기물 및 폐수에 대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출에서 운반 및 최종처분까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위탁처리하도록 한다.

3.6 기업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뜻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필요성 및 주기) 제품 생산 혹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은 고유의 유해성(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과 위해성(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

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을 지니고 있어 사용, 수송, 저장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기업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사용, 수송, 저장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기업은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포함)명과 사용량, 용도, 위해성에 대한 세부 설명을 명시하여 내외부에 공유함으로써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이 기재된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 실시간 화학물질 관리시스템(R-CMS)과 같은 사내 화학물질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이용 및 배출 저감) 근본적으로 기업은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규정된 취급제한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저독성 원·부재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안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화학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 또한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설비 개선, 공정 관리 등의 배출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규제 위험) 화학물질 관련하여 기업은 화학3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EU REACH(화학물질관리제도), RoHS(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와 같은 화학물질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부록 2>참고)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화학물질 사고나 우발적 사건과 같은 잠재적인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고 이에 대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사고 대응 체계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기업은 이를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 발생가능한 사고 유형(상황) 구분
-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 계획·절차 마련
- 비상사태 대응 조직도 등을 마련하여 구성원의 역할 명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기업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사고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하여 상해, 재물 손괴,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에 힘쓰고, 오염지역 정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같은 사후 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생태계 보전

4.1 생태계는 깨끗한 물과 공기, 식량안보와 인간 건강의 근간이 되며,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뿐 아니라 동식물의 생존,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삼림자원, 수자원, 생물자원, 해양자원 등의 원천이 되는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자연자원 관리) 기업은 생산활동에서 삼림자원, 수자원, 생물자원 등 다양한 자연자원을 이용하며, 특정 자원을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자원에 대한 자원의존성이 결정되고 관련 위험의 중요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기업은 삼림자원, 수자원 등 자원 이용에 따른 위험과 기회 요인을 평가하고, 해당 자원에 대한 관리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업의 자원 사용에 따른 영향과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위험요소 뿐 아니라 자원 이용에 따른 지역사회의 잠재적 영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하며,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은 경영활동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범위를 설정하고, 사업장 내·외부로 지정된 보호구역과 그 외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모두를 모니터링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기업의 활동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멸종위기 동식물의 위협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종(species)에 대한 보호 조치
- 생물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 및 그에 따른 생물자원 보호 활동
-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등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회사의 환경경영 전략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가 높거나 특별히 보호·관리되는 구역, 멸종위기 동식물에 위협이 되는 요인 등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양생태계 보전) 화학물질이나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바다 오염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생태계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먹이사슬을 통해 다양한 개체로 전이되고 축적될 수 있으며 해양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기업은 경영활동을 이행할 때 해양생태계

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식량과 미래산업의 핵심자원으로 해양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및 보호대상종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성과관리

5.1 기업은 친환경 생산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원·부자재, 용수, 에너지 등의 자원사용량과 생산공정 및 최종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수, 환경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환경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기업은 투입자원의 사용량과 최종단계에서의 배출량에 대한 정량 데이터를 포함한 환경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부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에 대한 투입량, 발생량(물질수지, mass balance)을 분석하고, 환경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환경오염물질의 법적 허용기준 대비 엄격한 사내기준 설정
- ✓ 용수 및 에너지 소비, 폐기물, 환경오염물질 발생량 모니터링 및 측정
-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검증을 통한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 확인, 배출책임의 범위 설정, 주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 모니터링 및 측정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이 환경개선에 대한 기업의 노력 및 성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정보를 포함한 사용량, 배출량 등의 환경데이터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 생산활동·친환경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5.2 기업은 환경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적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환경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환경성과평가의 의의) 환경성과평가(EPE :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는 기업의 환경성과 평가지표 선정, 환경경영 활동 성과에 대한 측정, 분석 및 평가, 경영자 보고와 의사소통까지의 일련의 활동을 포괄한다. 이는 기업의 환경성과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이러한 과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개선절차이다.

기업의 환경경영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기존의 다양한 환경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가체계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환경성과평가시스템의 구축은 기업의 환경경영 수행에 있어 중요한 전략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산업적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성과 평가목적에 적합한 환경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환경경영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성과 관리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성과평가시스템을 기업의 경영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기업은 객관적인 환경성과 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경영 실행계획의 이행수준,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환경법규 및 규제 준수 등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환경성과평가 고려사항) 기업의 환경성과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영활동과 운영활동에 대한 제반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품, 생산방식, 판매시장 등에서 기업 간 차이가 있으므로 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성과 개선 뿐 아니라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성과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환경성과평가 목적 혹은 결과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환경성과에 대한 접근방법과 범위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성과평가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변화된 환경여건과 이슈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환경성과평가에 반영되도록 평가지표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5.3 기업은 기업의 환경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적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기준과 지침을 수립하고, 환경심사 목적에 따른 내부심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야 한다.

(내부환경심사의 의의) 내부환경심사는 환경경영체제의 운영 실태 및 성과를 점검하고 실행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내부환경심사는 기업의 환경성과를 관리하고 통제하며, 환경 위험을 식별하여 이를 경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내부환경심사 요건) 기업의 효과적인 환경경영 활동 관리를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내부심사 수행을 위한 심사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심사원은 독립성, 전문성, 적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업은 심사에 필요한 적절한 권한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내부심사는 환경경영시스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내 전문가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외부 심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내부환경심사는 환경경영체제의 운영 상태를 심사하여 개선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내부 심사를 계획된 주기에 따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내부 심사원은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전년도 심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사내 환경안전관련 규정 준수 현황, 환경시설 점검, 환경경영 매뉴얼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5.4 기업의 환경성과평가 및 내부환경심사 결과는 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성과평가 및 내부환경심사의 활용) 환경경영은 기업 전체의 전략과 연계될 뿐 아니라 생산, 재무, 마케팅 등과 같은 기능적 전략과도 대응 관계에 있다. 때문에 환경성과 관리의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환경성과 개선을 이루기 위해 기업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특정 영역에서가 아니라 여러 수준의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때 환경성과평가 및 내부심사 결과는 의사결정자에게 환경성과 개선에 대한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환경성과 관리 및 평가, 내부심사 결과 드러난 부적합 사항의 조치 뿐 아니라 원인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성과 등의 비재무적 변수를 기업전체의 내부성과평가시스템과 연계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환경성과평가 및 내부심사 보고) 기업은 환경성과평가 및 내부심사에 대한 보고체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구성하여 환경성과평가 및 내부심사 결과를 관련 책임자 뿐 아니라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를 포함한 기업의 의사결정 조직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해당 의사결정 조직은 환경성과평가, 환경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환경경영 전략과 방침, 환경목표 및 계획, 환경경영체계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사후개선 및 사전예방 조치) 환경성과평가, 내부심사를 통해 환경목표 또는 환경경영 실행계획의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부적합 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성과평가시스템과 연계) 환경성과평가 및 내부심사 결과가 환경성과 향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포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의 일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사회에서 환경성과평가 시 내부성과평가시스템과 연계된 환경성과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6. 환경회계

6.1 기업은 환경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 원가 및 편익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지속가능성회계 프레임과 연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환경회계의 정의 및 필요성) 환경회계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 원가와 편익을

인식하고 측정 및 배분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환경경영 활동이 기업의 환경비용, 경제적 수익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환경 관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환경경영을 위한 노력 및 개선활동에 대한 정량적 성과 보고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투명성과 환경적 책임이 기업 경영의 핵심적 요소로 부상하면서 주주, 투자자, 채권자, 정부, 소비자, 지역사회 및 환경단체 등 외부이해관계자에게 환경성과 및 환경회계 정보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환경회계 운영 및 활용) 기업은 환경경영 활동에 사용된 자원인 환경원가를 측정하고, 유무형의 환경 효익을 파악하여 환경경영 활동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회계 정보를 작성할 때에는 이슈 발생 가능성과 재무적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용의 충실성, 정보의 유용성 및 중립성, 명료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은 환경회계를 통해 내부 의사결정자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은 환경회계 정보를 환경 관련 투자계획과 같은 내부 의사결정에 활용하거나 환경성과 정보와 연계하는 등 기업의 다른 경영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6.2 기업은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의 기후변화 정책 대응을 위하여 탄소 배출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내재화하는 내부탄소가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탄소가격제 의미)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의 도입이 공공 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탄소가격제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하여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탄소세(Carbon Tax), 배출권거래제(ETS), 크레딧(Crediting) 메커니즘, RBCF(Results-Based Climate Finance), 내부탄소가격제(Internal Carbon Pricing)로 구분된다. (<부록 3>참고)

(내부탄소가격 도입) 내부탄소가격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해 탄소 배출에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한 기업은 탄소가격을 내재화하여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와 같은 기후변화 정책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관련 전략적 의사결정에 내부탄소가격을 활용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IV. 이해관계자 소통

1. 이해관계자 설정

1.1 기업은 경영활동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환경경영 이행을 위한 주요한 이해관계자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 의의)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활동, 제품, 서비스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혹은 단체를 의미한다. 이해관계자는 고객, 임직원,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및 시민단체, 국내외 투자자 등 다양한 집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활동이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외부의 관점을 제공하는데, 기업은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사항을 규명함으로써 이로부터 비롯된 기업의 준수 의무사항과 주요한 영향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식별) 기업은 재무적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받는 주요한 이해관계자도 고려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환경경영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경영 활동에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해관계자 대응 활동

2.1 기업은 환경경영에 대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사항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이해관계자 접근성을 높이고 상호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 의사소통의 필요성)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며,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기업은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장기적인 신뢰관계 구축, 기업의 투명성 확보, 이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기업 내부의 환경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위험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트렌드 파악을 통해 해외사업 발굴 등 신규 사업 기회를 확보하여 친환경 기업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주기적 의사소통) 기업은 주기적 소통을 통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과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의 관련성 및 중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와의 논의사항을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을 모색하고, 의사소통 채널의 운영 주체, 운영

주기,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내부 규정을 수립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 활동 예시)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회의, 컨퍼런스, 워크샵, 공청회, 세미나, 자문위원회, 인터뷰, 단체교섭, 웹 기반의 포럼 등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하여 실행될 수 있다.

2.2 기업은 위험과 기회 요인 분석에 따른 국내외 이니셔티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환경 관련 국내외 이니셔티브 자발적 참여) 환경문제는 지역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 기업은 이니셔티브(혹은 인증)가 요구하는 이행 활동이나 지침을 따르기 위해 별도의 사내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업 및 국내외 관련 모범규준이나 행동강령을 자발적으로 채택하여 실행할 수도 있다. (<부록 4>참고)

3. 환경정보 공개

3.1 기업은 환경경영 활동과 관련된 주요 사항 및 환경성적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환경정보 공개의 필요성) 환경경영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는 내부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따른 효용을 극대화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또한 기업 뿐 아니라 투자자를 비롯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고경계, 대상기간 및 주기) 기업은 자발적인 환경정보 공개를 통해 환경정보 공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은 환경정보의 보고경계를 국내 혹은 국내외 전 사업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보고대상기간을 1년 이하로 두고, 연간 혹은 분기별로 환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의 시의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보고 채널) 기업의 환경경영 성과 및 이슈를 포함한 중요 정보는 불특정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공개 채널(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통합보고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

3.2 기업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체계를 결정하고, 작성하는 환경정보가 명확성, 비교가능성, 일관성, 신뢰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개 정보의 결정) 기업은 환경경영 관련 공개 내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정보이용자인 이해관계자의 기대수준과 관심사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환경심사에서 외부심사(제3자 검증)는 환경경영의 장단점에 대한 독립된 인증 및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경영진에게 환경경영 실행의 장단점에 대한 독립된 인증 및 분석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의 환경경영 관리, 계획,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높인다.

(공개 정보의 내용) 기업은 환경경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을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환경경영 활동과 주요 항목 및 성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환경경영 관련 정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할 수 있고, 환경경영 성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제공할 필요가 있다.

- ✓ 환경경영 관련 거버넌스 체계(이사회, 전사적 의사결정조직)
- ✓ 환경경영 방침, 환경경영 전략 및 목표와 세부 추진 계획
- ✓ 회사의 환경경영 위험/기회 요인, 위험요소 식별/평가/관리체계
- ✓ 환경법규 위반 및 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 환경경영 실무조직 및 기업문화
- ✓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구매·판매 실적, 친환경 공급망 관리
- ✓ 사업장의 주요 환경성과 지표 및 데이터
- ✓ 자연자원의 이용 및 관리
- ✓ 환경성과평가시스템 및 내부환경심사 체계, 환경회계시스템 운영 내역
- ✓ 기업이 파악한 이해관계자, 소통 및 대응 활동 등

특히 환경법규를 위반한 내역이나 사고의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은 정보의 시의성이 중요하므로 사건 발생 즉시(혹은 최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당 내용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개 정보의 요건) 기업은 공개되는 정보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만족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명확성: 환경정보는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 ✓ 비교가능성: 환경정보의 보고기준 및 범위는 섹터, 산업 또는 포트폴리오 내의 조직 간의 비교 또는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 ✓ 일관성: 환경정보의 보고대상 및 범위, 보고기간, 보고빈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

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공개하여야 한다.

- ✓ 신뢰성: 기업이 작성한 환경정보가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객관적,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환경정보에 대한 제3자 검증은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내부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V. 부록

<부록 1> RE100

1. RE100 개요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를 의미하고 있으며, 기업 등 전기 소비 주체가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조달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임

2. 가입 목적

RE100은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임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우선시함으로써, 전 세계의 저탄소 경제 체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힘쓰며, 저탄소 신시장을 제공하기 위한 선제적 리더십을 제공하고자 함

3. 가입 요건

RE100 회원은 글로벌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을 포함하여 IT, 금융 서비스, 제약, 자동차 생산 등의 섹터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과 투자자들 또한 zero-emissions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음

이를 위하여, 캠페인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첫째,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영향력 있는 기업(influencial)'으로 인정되어야 함

- 전 세계 또는 국내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브랜드

- 주요 다국적기업(포춘 선정 1,000대 기업 또는 동급)

- 상당한 전력 사용량(예시; 0.1TWh/ 100GWh/ 100,000MWh초과)

- RE100 목적에 도움이 되는 전 세계 또는 국내에서 확실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기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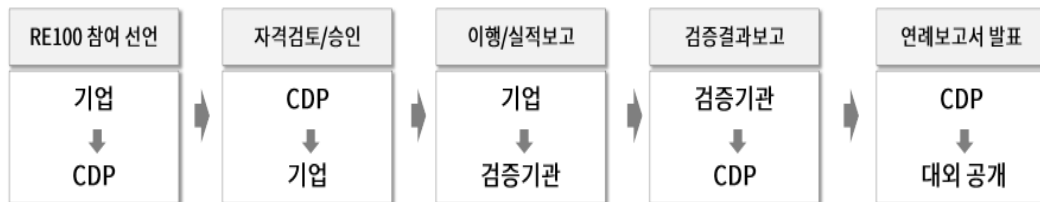
○ 둘째,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기로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조달 또는,

- 100% 달성을 위한 명확한 전략과 일정 수립 또는,
 - 이니셔티브 가입 후 12개월 내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작성
- 셋째, 모든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100% 재생에너지 달성 목표일을 포함하여 다음의 요건을 최소한으로 만족하는 재생에너지 전략을 수립해야 함
- 2050년까지 100%, 최소한 중간 단계로는,
 -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90%
- 넷째, RE100가입 기업은 매년 보고 스프레드시트(CDP 질문지 보고 가능)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략과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함
- 최소한 전력 총사용량 및 재생에너지 총사용량 데이터
 - 기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 요구

4. 추진 절차

RE100은 기업이 선언한 재생에너지 목표 및 달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검증하고 CDP 위원회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있음



출처:

- 1) RE100, Annual Report, RE100 Progress and Insights December 2019
- 2) <https://www.there100.org>

<부록 2> 화학물질 규제 대응 관련 사이트 목록

기업은 화평법, 화관법 등 국내 화학물질 관련 규제에 대응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1. KCMA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http://www.kcma.or.kr/>)

2.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s://ncis.nier.go.kr/main.do>)

산업체의 화평법, 화관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물질 기본정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시험자료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3. 화평법/화관법 산업계도움센터(<https://www.chemnavi.or.kr/main.do>)

화평법, 화관법 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서비스 제공

4.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main.do>)

화관법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 화학사고 발생 이력 및 화학사고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 취급자, 화학사고 대응기관, 국민에게 제공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포털

5.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potweb/main.do>)

화평법에 관한 법적이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환경부 시스템

5. K-CHESAR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http://kchesar.kcma.or.kr/main/main.asp>)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위해성자료'의 작성을 지원

6. 안전보건공단-화학물질정보(<http://msds.kosha.or.kr/>)

MSDS 작성 및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화학물질정보 검색 사이트

<부록 3> 탄소가격제의 5가지 유형

탄소가격제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아래 5가지 유형 중 기업은 내외부 환경에 가장 적합한 유형의 탄소가격제를 선택, 도입할 수 있다.

구분	상세
탄소세(Carbon Tax)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 부과를 통해 청정에너지 사용 전환 인센티브를 부여(가격 고정, 감축량 불확실성 존재)
배출권거래제(ETS)	특정부문에서의 총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이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달성(감축량 고정, 가격 불확실성 존재)
크레딧(Crediting) 메커니즘	프로젝트 결과물로 발생한 배출량 감축분을 제3자검증을 거쳐 크레딧으로 인정받아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에 판매
RBCF(Results-Based Climate Finance)	사전에 설정된 감축목표를 달성(제3자검증 필요)할 경우, 자금지원을 받는 구조로 RBCF를 통해 민간부문 탄소시장 활성화
내부탄소가격제 (Internal Carbon Pricing)	정부나 기업 등이 탄소사용에 자체 내부가격을 설정 및 반영하여 저탄소 기술에 투자를 촉진하고 미래의 기후 정책과 규제를 대비

출처: Carbon Pricing Leadership Coalition 홈페이지, 탄소가격제 현황 및 최근 동향(2020, KDB미래전략연구소-유지혜)에서 재인용

<부록 4> 환경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이니셔티브 예시

아래 표는 국내외 주요 환경 이니셔티브 또는 환경 관련 캠페인이나 협약을 나타낸다. 기업은 환경적 중요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환경 관련 국내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환경보호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금융 및 투자기관의 경우, CDP 및 TCFD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탄소배출과 관련된 기업의 주요 정보에 기초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기업은 금융 기관과 기관투자자, 주주들이 기후변화가 기업의 미래가치에 미칠 투자 위험과 기회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탄소정보를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인증/이니셔티브 관련 활동	내용
AEPW(Alliance to End Plastic Waste, 플라스틱 쓰레기 제거 연합)	해양 폐플라스틱 감소 및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 연합
BNBP(Biz N Biodiversity Platform, 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	생물다양성 및 지속가능 이슈에 대한 기업/산업계의 인식제고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CCWG(Clean Cargo Working Group)	전 세계 주요 선주 및 화주로 구성된 비 정부 민간기구로 선사-화주간 친환경 물류전략을 공유하는 협의체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Climate Change, Water, Forest, Supply Chain, Cities, Carbon Action	기후변화, 물, 생물다양성 관련 기업정보 공개 기업에 기후변화 등 환경관련 정보공개 요청
Getting to Zero 2030 Coalition(탄소배출 제로 연대)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목표(제로배출선박을 2030년까지 사용화) 달성을 위한 전세계 해운산업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
RC(Responsible Care)	화학산업의 이미지 제고, 환경/안전 사고 예방,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발적 환경/안전/보건 개선 활동
RE100(Renewable Energy 100%)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적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캠페인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과학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지침과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기후행동을 강화하는 이니셔티브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재무정보 전달협의체)	기후 관련 재무보고 공시를 권고하는 글로벌 가이드라인 준용
UNEP FI(유엔 환경 계획 금융이니셔티브)	지속가능발전 관련 금융기관의 자발적 모임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1회용품을 구매하지 않고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발적

	협약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고농도 계절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계와 환경부의 자발적 협약